

의안번호	2211416
의 퇴 인	김미애의원
회 답 일	2025.11.7.
추 계 번호	25D359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6·25참전 소년소녀병에게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취업,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의 진료, 보철구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조 477억 4,400만원(연평균 2,095억 4,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보상금	27,930	22,765	18,058	13,899	10,348	93,000	18,600
유족보상금	190,347	186,410	182,325	178,046	173,623	910,751	182,150
부양가족수당	1,079	837	633	464	329	3,341	668
취업지원	54	59	63	68	72	316	63
보훈병원 진료	1,450	1,486	1,527	1,573	1,624	7,660	1,532
위탁병원 진료	5,818	6,104	6,394	6,686	6,981	31,983	6,397
보철구지원	201	168	136	108	81	693	139
합계	226,879	217,829	209,136	200,844	193,057	1,047,744	209,5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제1항제9의2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신설	6·25참전 소년소녀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지원 등에 의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여 병역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의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여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함	의무규정
2	안 제12조 (보상금)	보상금 지급대상에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포함	의무규정
3	안 제15조의2 (부양가족수당)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포함	의무규정
4	안 제2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교육지원 대상에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포함	의무규정
5	안 제38조 (직업훈련)	직업훈련 지원 대상에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포함	의무규정
6	안 제42조 (진료)	위탁병원 진료지원 수준을 재일학교의용군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43조의2 (보철구의 지급)	보철구 지급 지원 대상에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포함	의무규정
8	안 제44조 (의학적 재활 등)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 지원 대상에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포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제1항제9의2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신설	○	-
2	안 제12조 (보상금)	○	-
3	안 제15조의2 (부양가족수당)	○	-
4	안 제2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본인의 연령 및 자녀의 연령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참고로 2012년 7월 이후 등록된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은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음
5	안 제38조 (직업훈련)	○	-
6	안 제42조 (진료)	○	-
7	안 제43조의2 (보철구의 지급)	○	-
8	안 제44조 (의학적 재활 등)	×	참전유공자는 재활체육지원사업 기 지원대상자이며, 상이 참전유공자의 경우 상이군인 재활체육 지원사업 기 지원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어 6·25소년소녀병에 대한 의학적 재활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방부가 제출한 6·25참전 소년소녀병 현황과 통계청의 소년소녀병 출생년도의 출생자 수 및 2024년 기준 생존자 수를 활용하여 생존률을 산정하여, 2024년 기준 소년소녀병 생존자수를 추정한 후, 통계청의 연령별 장래사망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6·25참전 소년소녀병 수를 추정함

- 국방부에 따르면, 6·25참전 소년소녀병은 2만 9,622명이며 이 중 2,573명이 전사하고 전후에 2만 7,049명이 생존하였음

[표 2] 6·25 참전 소년소녀병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전사자	전후생존자
합계	29,622	2,573	27,049
남성	29,155	—	26,623
여성	467	—	426

자료: 국방부

- 6·25참전 소년소녀병은 1933년부터 1936년 출생자로, 이들의 연도별 평균생존률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 1933~1936년 출생자의 각 연도별 평균생존율 추정

(단위: %)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남자	4.4	3.4	2.6	1.9	1.3
여자	15.4	12.8	10.4	8.3	6.4

주: 통계청 각 년도별 출생자 수 및 2024년 기준 생존자 수에 통계청의 향후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생존율을 추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933~1936년 출생자의 각 연도별 평균생존율을 적용하여, 6·25참전유공자의 연도별 생존자수를 추정함

[표 4] 6·25참전 소년소녀병 생존자 수 추정

(단위: 명)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남자	1,181	913	687	501	353
여자	66	55	44	35	27
합계	1,247	968	731	536	3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상금 및 부양가족수당(안 제12조 및 안 제15조의2)

-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포함할 경우, 보상금은 본인과 유족에게 지급됨
 - 본인의 경우, 6·25소년소녀병 생존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상금 지급단가는 2025년 기준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일반) 수준으로 가정하며, 최근 5년간 인상률인 5%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함
 - 생존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경우, 현재 부상자는 전상군경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고 부상자가 아닌 경우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생존 6·25참전 소년소녀병 중 상이등급별 인원은 6·25참전유공자 28,511명 중 1~6급 상이군경 비율 4.6%(1,308명)과 7급 상이군경 비율 4.7%(1,347명)을 적용하여 산정함
 - 상이군경의 경우, 상이등급 6급 이상의 경우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단가보다 기존 보상금 지급단가가 높은 반면, 7급 상이군경 및 부상이 없는 경우 현재 지급받고 있는 보상금 및 참전명예수당이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단가보다 낮아 그 차액을 산정함

[표 5]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금(본인)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지급대상 (명)	전체	1,247	968	731	536	380
	상이군경(6급 이상)	57	45	34	25	17
	상이군경(7급)	59	45	34	25	18
	부상없음	1,131	878	663	486	345
개정안에 따른 지급단가(천원)		1,867	1,960	2,058	2,161	2,269
기존 지급단가 (천원)	상이군경(6급 이상)	1,867	1,960	2,058	2,161	2,269
	상이군경(7급)	718	754	792	832	874
	부상없음	516	553	592	634	679
추가 지급단가 (천원)	상이군경(6급 이상)	0	0	0	0	0
	상이군경(7급)	1,149	1,206	1,266	1,329	1,395
	부상없음	1,351	1,407	1,466	1,527	1,590
추가재정소요 (백만원)	상이군경(6급 이상)	0	0	0	0	0
	상이군경(7급)	813	651	517	399	301
	부상없음	18,336	14,824	11,663	8,905	6,583
	합계	19,149	15,475	12,180	9,304	6,884

주: 6급 이상 상이군경의 경우 기존 보상금 지급단가는 보상금이 가장 적은 6급 기준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며, 유족이 자녀인 경우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¹⁾되기 때문에, 해당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하고, 사망한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배우자 수를 산정함
 - 배우자 수는 2024년 기준 예상 사망 6·25참전 소년소녀병 2만 4,730명에 사망 무궁수훈자의 유배우자 비율(본인의 40.4%)을 적용하고, 매년 배우자 사망비율 8.1%와 신규 사망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유배우자 수(매년 사망하는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유배우자 비율 40.4%)를 고려하여 추정함

[표 6] 6·25참전 소년소녀병 유족 보상금 지급 대상자 수 추정: 2024~2031년

(단위: 명)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사망 6·25참전 소년소녀병	24,730	25,124	25,482	25,802	26,081	26,318	26,513	26,669
신규 사망 6·25참전 소년소녀병	-	393	359	320	279	237	195	156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자 수	9,991	9,341	8,729	8,151	7,604	7,083	6,588	6,118

주: 2024년 기준 사망 6·25참전 소년소녀병 수에 사망 무궁수훈자 유배우자 비율 40.4%(2023년말 기준)을 적용하여 2024년 기준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자 수 초기값을 설정하고, 매년 배우자 사망 비율 8.1%와 신규 사망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유배우자 수를 고려하여 매해의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자 수를 추정

1) 법 제12제 제2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경우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이 지급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보상금 지급단가는 2025년 기준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보상금(일반) 수준으로 가정하며 최근 5년간 인상률 5%를 적용하여 추정한 유족 보상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7] 6·25참전 소년소녀병 유족보상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지급대상(명)	8,151	7,604	7,083	6,588	6,118
월 지급단가(천원)	1,946	2,043	2,145	2,252	2,365
추가재정소요(백만원)	190,347	186,410	182,325	178,046	173,6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른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은 6·25참전 소년소녀병과 그 배우자 및 보상금을 받는 자녀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로,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은 생존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임²⁾
 -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은 생존 6·25참전 소년소녀병 수에 무공수훈자 유 배우자율 72.1%를 적용함
 - 추계기간 부양가족수당 지급단가는 2025년 지급단가 10만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8] 6·25참전 소년소녀병 부양가족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지급대상(명)	899	698	527	386	274
월 지급단가(천원)	100	100	100	100	100
추가재정소요(백만원)	1,079	837	633	464	3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6·25참전 소년소녀병에게 보상금 및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계기간의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2)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사망한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경우, 배우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부양가족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표 9] 6·25참전 소년소녀병 부양가족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상금	19,149	15,475	12,180	9,304	6,884	62,993
유족보상금	190,347	186,410	182,325	178,046	173,623	910,751
부양가족수당	1,079	837	633	464	329	3,341
합계	210,575	202,723	195,137	187,814	180,835	977,08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취업지원(안 제29조)

□ 6·25참전 소년소녀병 및 그 자녀에게 직업훈련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아래와 같음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본인의 경우 2027년 기준 연령이 91세~94세로 직업훈련을 받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
- 자녀의 경우, 1960년대 평균 가구원 수 5.47명 중 부부 2명을 제외한 자녀 3.47명으로 가정하여 지원대상자 수를 산정하며, 지원대상자 중 지원비율은 0.16%³⁾를 적용
- 지원단가는 2024년 60세 이상 지원단가 30만원에 2023~2024년 단가 인상률 7.1%⁴⁾를 적용

[표 10] 6·25참전 소년소녀병 직업훈련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전후 생존자	27,049	27,049	27,049	27,049	27,049
자녀 수	93,860	93,860	93,860	93,860	93,860
지원대상인원	150	150	150	150	150
월 지급단가(천원)	360	390	420	450	480
추가재정소요(백만원)	54	59	63	68	72

주: 1) 자녀 수는 전후생존자 1인당 1960년대 평균 가구원 수 5.47명 중 부부 2명을 제외한 3.47명을 적용하여 산정

2) 지원대상인원은 자녀수 대비 지원비율 0.16%를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60세 이상 취업지원 대상자녀 472,511명 중 최근 5년간 취업능력개발비를 지원받은 평균인원은 772명으로 0.16%임

4) 2022년 하반기 취업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과목조정에 따라 지원단가가 높은 드론, 요양 등 과목이 추가되어 지원단가가 2021년 16만원에서 2022년 21만원, 2023년 28만원 등 급격한 인상을 보임. 국가보훈부는 당분간 취업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과목 조정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음. 이에 추계에서는 과목조정이 없었던 2023~2024년 지원단가 인상률 7.1%(인건비 등 기타 요인의 변화에 따른 지원단가 인상)을 적용함

다. 보훈병원 진료(안 제4조)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본인의 경우, 현재 참전유공자로서 진료비의 90%를 지원받고 있으나,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일학도의용군인 수준인 진료비의 100%를 지원받는 것으로 가정

- 수진횟수는 2024년 참전유공자의 수진횟수 6.9회를 적용하였으며, 진료단가는 90% 감면 지원 단가(2024년도 참전유공자 진료비 지원단가(107,734원)에 2020~2024년 연평균 증감율 2.8% 적용 후 100%로 환산 단가와 차이 산정

[표 11] 6·25참전 소년소녀병(본인) 보훈병원 진료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①대상인원(명)		1,247	968	731	536	380
②수진횟수(회)		6.9	6.9	6.9	6.9	6.9
③진료단가차액 (원)	90%	117,040	120,317	123,686	127,149	130,709
	100% 환산	130,044	133,686	137,429	141,277	145,232
	단차차이	13,004	13,369	13,743	14,128	14,523
진료비(백만원) (①×②×③)		112	89	69	52	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6·25참전 소년소녀병 유가족의 경우, 현재 보훈병원 진료지원이 없는데, 6·25참전 소년소녀병이 국가유공자로 적용될 경우 그 배우자와 선순위유족 1인은 보훈병원 진료비의 60%를 지원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본인 생존 시,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를 지원하며, 본인 사망시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에 대해 지원
- 수진횟수는 2024년도 60% 감면대상자의 수진횟수인 0.6회를 적용하였으며, 진료단가는 2024년 60% 감면대상자의 진료단가 74,035원에 2020~2024년 연평균 증감율 4.1% 적용

[표 12] 6·25참전 소년소녀병 유가족 보훈병원 진료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㉔대상인원 (명)	본인 생존시(배우자)	899	698	527	386	274
	본인 사망시(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5,802	26,081	26,318	26,513	26,669
	㉔합계	26,701	26,779	26,845	26,899	26,943
㉕수진횟수(회)		0.6	0.6	0.6	0.6	0.6
㉖진료단가(원)		83,520	86,944	90,509	94,220	98,083
진료비(백만원) (㉔×㉕×㉖)		1,338	1,397	1,458	1,521	1,5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3]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훈병원 진료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본인	112	89	69	52	38	361
유가족	1,338	1,397	1,458	1,521	1,586	7,299
합계	1,450	1,486	1,527	1,573	1,624	7,6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위탁병원 진료 지원(안 제42조제7항)

- 현재 참전유공자 본인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의 90%를 지원받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음
- 개정안에 따라 6·25참전 소년소녀병 및 그 유족 중 선순위가 1명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보상금을 받는 75세 이상 선순위유족 1인에게 진료비의 60%를 지원함
- 본인 사망 시에만 75세 이상 선순위유족 1인에 대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용이 지원되어, 6·25소년소녀병 전후 생존자 2만 7,049명에서 각 연도별 추정 생존자 수를 감한 인원에 대해 각 1명씩 보상금을 받는 75세 이상 선순위유족이 있는 것으로 가정함

[표 14] 6·25참전 소년소녀병 유족 위탁병원 진료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대상인원 (명)	진후 생존자	27,049	27,049	27,049	27,049	27,049
	추정 생존자	1,247	968	731	536	380
	㉠75세 이상 전순위유족	25,802	26,081	26,318	26,513	26,669
㉡수진횟수(회)		8	8	8	8	8
㉢진료단가(원)		28,186	29,257	30,369	31,523	32,721
진료비(백만원) (㉠×㉡×㉢)		5,818	6,104	6,394	6,686	6,9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보철구 지급

□ 개정안에 따라 6·25참전 소년소녀병에게 보철구 지급 시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 산정

- 보철구 지급대상자 수는 6·25참전 소년소녀병 수에 6·25 참전유공자 중 상이군경 등록비율(2025년 8월 기준 9.3%)을 적용하여 산정
- 보철구 지급단가는 2024년 보철구 지급단가 139만 4,000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7.5% 적용

[표 15]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철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지급대상(명)	116	90	68	50	35
지급단가(천원)	1,732	1,862	2,002	2,152	2,313
추가재정소요(백만원)	201	168	136	108	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추계결과

- ##### □ 개정안에 따라 6·25참전 소년소녀병에게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취업,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의 진료, 보철구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조 177억 3,700만원(연평균 2,035억 4,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보상금	19,149	15,475	12,180	9,304	6,884	62,993	12,599
유족보상금	190,347	186,410	182,325	178,046	173,623	910,751	182,150
부양가족수당	1,079	837	633	464	329	3,341	668
취업지원	54	59	63	68	72	316	63
보훈병원 진료	1,450	1,486	1,527	1,573	1,624	7,660	1,532
위탁병원 진료	5,818	6,104	6,394	6,686	6,981	31,983	6,397
보철구지원	201	168	136	108	81	693	139
합계	218,098	210,539	203,258	196,249	189,593	1,017,737	203,5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방부가 제출한 6·25참전 소년소녀병 현황과 통계청의 소년·소녀병 출생년도의 출생자 수 및 2024년 기준 생존자 수를 활용하여 생존률을 산정하여, 2024년 기준 소년소녀병 생존자수를 추정한 후, 통계청의 연령별 장래사망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6·25소년·소녀병 수를 추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